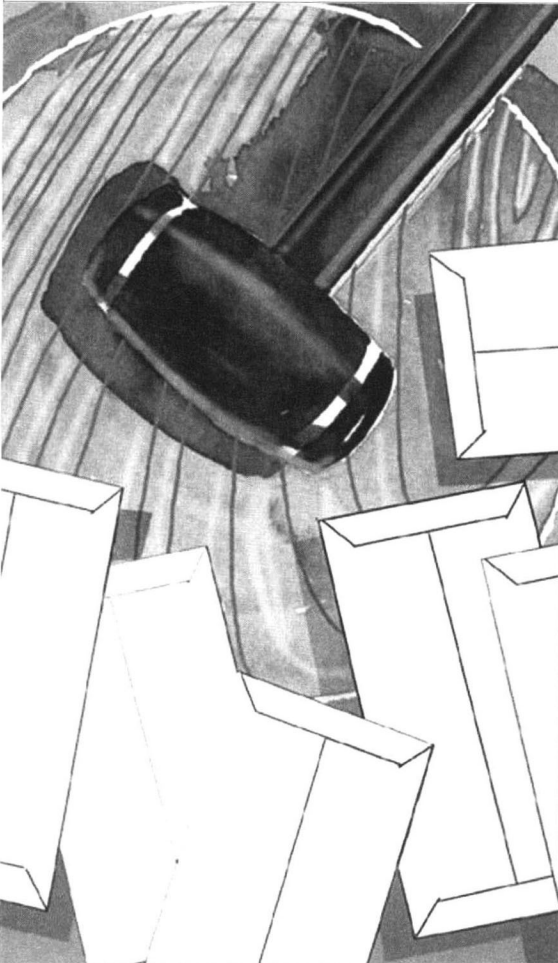




#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· 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

산업자원부



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- 117호

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5조제2항, 제26조제3항, 제41조제2항, 제42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(별표17의2 제4호)의 규정에 의하여 “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?검사수수료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”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07. 10.2  
산업자원부 장관

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· 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

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· 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 
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**

항목		1호	2호(자동차캐비닛히터용)		3호
		(가정 · 상업용)	여름용	겨울용	
조성 (mol%)	C <sub>3</sub> 탄화수소	90이상	10이하	15이상 35이하	-
	C <sub>4</sub> 탄화수소	-	85이상	60이상	85이상
	부타디엔	0.5이하			
황함량(wt ppm)		100이하			
증기압(40°C, MPa)		1.53이하	1.27이하		0.52이하
밀도(15°C, kg/m <sup>3</sup> )			500~620		
잔류물질(ml)		0.05이하			
동판부식(40°C, 1h)		1이하			
수분		합격	-		

- 주) 1. C<sub>3</sub>탄화수소 : 탄소수 3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 
 2. C<sub>4</sub>탄화수소 : 탄소수 4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 
 3. 황분의 경우 부취제 첨가 후를 적용한다.  
 4. 겨울용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, 여름용은 4월부터 10월까지 적용한다. 다만, 유통단계는 제품교체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1월 및 4월에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적용하며, 여름용과 겨울용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10mol% 초과, 15mol% 미만의 C<sub>3</sub>탄화수소 조성비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 
 5. 2호(자동차용 및 캐비닛히터용) 중 이소부탄 30mol%이상인 경우 겨울용 C<sub>3</sub>탄화수소 혼합비율 하한을 5mol%로 한다.  
 6. 대형 승합차용, 산업용 및 공업원료용의 경우 C<sub>3</sub>탄화수소와 C<sub>4</sub>탄화수소 조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 
 7. 제주지역은 2호, 겨울용의 위 기준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으며, 기타 특수용도로 인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, 조정한다.